

『2019년 국민과 함께 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소개



1. 필요성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입법예고안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 정부입법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국민들의 참여 욕구 및 관심 증대

입법과정의 신뢰성 확보

-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심층 반영하여 입법과정의 신뢰성 확보
-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쌍방향 소통을 통해 입법예고안의 정확한 의미전달 가능

법령용어의 일반성 확보

- 법령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용어 순화, 어문규정(맞춤법)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질적 자문 필요
-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입법예고안을 각 정부부처 입법에 활용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법령안 새로 쓰기
사업 시행

- 소관 부처의 법령 입안단계부터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알기 쉽게 수정
- 법령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제고 및 미래세대의 관심 유도

2. 목 적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

목 표

국민 참여입법을 통해 입법과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

현안

어려운
법령용어

접근성의
한계

홍보 부족

국민의 직접 참여 기회 마련



입법예고안
관심 증대



국민 참여
법령 정비



대국민 홍보

현장중심적인 국민의견 반영을 통한 입법예고안의 내실화

3. 운영 절차



4. 국민 자문단

분야 및 목표

자문단 신청시 관심분야 선정 유도

경제 분야

- 재정·경제, 조세, 농림축
· 수산, 에너지 등



사회 분야

- 사회복지, 노동, 환경, 보훈,
보건, 교육 등



행정 분야

- 지방제도, 교통, 국토, 주택,
건축, 도로 등



문화 분야

- 과학기술, 문화, 정보통신,
교통 등 기타분야



자문단 신청시 관심 분야 선정

국민 자문단 활동 혜택

- 참여횟수, 활동내용 등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소정의 부상지급
- 요건(20건 이상) 충족 시
활동증명서 발급
- 연간 우수 활동 자문단 선발 및
포상

자율
활동

5. 세부 절차



6. 자문 서식(예시)

입법예고안 통보 서식 예시 (전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분야	행정 분야	자문 난이도(총평)	상	○ 입법예고안 난이도 상. 이해하기 어렵다 중. 보통이다 하. 이해하기 쉽다				
제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자문내용(총평)	전체적으로 법문장이 길게 기재되어 있어 가독성과 이해도가 떨어짐	○ 우수의견 선정여부 - 2차 검토자가 선정 - 선정수 제한없음				
공고번호	12389			○ 유형 - 1: 법률의 한글화 - 2: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 - 3: 어문규정(맞춤법 등) - 4: 법 문장정비(법문장 새로쓰기 등) - 5: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명확화 - 6: 내용알법(제도 및 정책 변경)				
의견접수일	2019.01.30							
제안자	남승연							
1차선정	○ / X							
제안이유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비수도권 시·도를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추진되는 지역의 혁신성장사업 또는 전략산업에 대해 혁신적인 규제특례등을 부여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5852호, '18. 10. 16. 공포, '19. 4.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연번	주요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자문내용	유형	1차 검토내용	1차검토기	1차검토일
12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내용에 대하여 → 내용에	4			
49		③ 위촉위원이 해촉되거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 위촉하되,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③ (현행과 같음)	해촉 → 해촉(解職), 기산한다 → 계산한다	2			
72		④ 특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특구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특화특구위원회 ----- 특화특구 -----	출석하게 하여 → 참석시켜	4			
83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비위 → 비위(非違)	2			
102		3. 법 제47조의2 및 이 영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특구운영 성과평가의 평가 순위가 연속하여 3회 이상 하위 100분의 5 이내인 경우	3. --- 제24조----- 제17조----- ----- 특화특구운영 ----- 평가순 위과 -----	연속하여 3회 이상 → 3회 이상 연속하여	4			
125		< 신설 >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특구의 구조고도화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에서 → 까지	4			
		제26조(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우)	제19조(특화특구에 대한 수요조사 등)					

7. 국민자문단 활동방법



2019년 국민 자문단

1

국민 자문단 모집 신청서 제출

- 국민자문단 신청기간 : 상시 모집

2 자문단 선정 안내 및 분야별 자문 내용 (서식) 할당

- 입법예고안 정비 참여기간 : 자문단 선정시 ~ 2019. 12. 31. (화)
- 자문 내용 : 제안이유 검토 및 총평, 유형별 자문(법령의 한글화, 어려운 법령용어의 순화, 어문 규정 [맞춤법], 법 문장정비, 체계정비를 통한 간결화 · 명확화, 내용알법)

3

국민자문단 담당자에게 서식 이메일 제출

감사합니다.

